

제46호(2018. 4. 10.)

한·중미 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 및 시사점

조성주 오새라



목 차
contents

1. 협상 경과 및 결과	1
2. 상품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	2
3. 규범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	11
4. 시사점	14

감 수	김상현 부연구위원	061-820-2280	sanghyun@krei.re.kr
내용 문의	조성주 부연구위원	061-820-2376	sungjucho@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46호

한·중미 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 및 시사점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8. 4.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약 Summary

- 한·중미 FTA는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과 체결한 FTA로 2016년 11월 실질적 타결이 선언되었고 2018년 2월 정식서명을 완료함.
- 한·중미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자유화 수준은 약 69%(세번수 기준)로, 한·EU(97%), 한·미(98%)에 비해서는 낮고 한·ASEAN(70%), 한·칠레 FTA(71%)와는 유사함. 국가별로 별도의 양허안에 합의하였으나 국가별 차이는 크지 않음.
- 농축산물 상품 시장 개방에 있어 우리 측은 주요 민감품목을 협정배제(특히 쌀 관련) 또는 양허 제외하여 관세 감축 의무에서 제외시킴. 중미 측 관심 품목인 커피, 당류, 바나나, 파인애플 등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관세 감축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육류 중 일부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하였으나 장기 철폐로 양허하여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함. 중미산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현재 검역상 문제로 수입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FTA 발효에 따른 수입 증대의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중미 측의 농축산물 자유화 수준은 약 80%(세번수 기준)로 우리나라의 자유화 수준(69%)보다 높음. 특히 협정배제 품목은 없으며, 즉시 철폐 세번의 비중도 우리나라보다 높음. 전체 농축산물 중 63~84% 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10년 내 철폐로 양허함.
- 원산지 규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은 신선농축산물(HS 01류~14류)에는 대체로 완전생산기준, 가공농축산물(15류~24류)에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함. 이는 한·콜롬비아 FTA와 유사한 기준임.
- SPS와 관련해서는 WTO/SPS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간 정보 교환, 기술 협력 등을 증진하고 협의를 강화하도록 규정함. TBT와 관련해서는 WTO/TBT 협정 이상의 포괄적 수준을 규정함. TBT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관련 당사국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한·중미 FTA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체결한 FTA로 중미 측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이 큼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확대 및 중미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됨.

01 | 협상 경과 및 결과

한·중미 FTA는 2015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2018년 2월 정식서명 완료

- 한·중미 FTA는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과의 FTA로 2015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7차례의 공식 협상과 2차례의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가 개최됨. 2016년 11월 실질적 타결이 선언되고 이후 2017년 3월 가서명, 2018년 2월 정식서명을 완료함.¹⁾
 - 협상개시 이후 1차~4차 협상까지는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과테말라 포함)의 전체 자유화 수준을 협의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함.
 - 5차 협상에서는 국가별 양자 협의를 통해 국가별 민감도와 관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특히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부문의 협상을 가속화함.
 - 6차, 7차 협상에서는 실질적인 협상이 추진되었고, 7차 협상에서는 일부 쟁점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합의함.
- 한·중미 FTA는 전체 상품 양허 자유화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보임. 농축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 측이 약 69%, 중미 측이 약 80%임. 우리 측은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 협정배제, 양허제외, 관세 장기철폐 등의 양허 방식을 적용함.
 - 중미 측 농축산물 양허결과 협정배제 품목은 없으며 관세 즉시 철폐 세번의 비중 또한 우리나라 보다 높음. 전체 농축산물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 즉시 또는 10년 내 철폐로 양허함.

1) 한·중미 FTA는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6개국과의 FTA로 추진되었으나, 과테말라가 협정 발효 후 공식적인 가입절차를 통해 추후 협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중미 5개국과의 FTA로 정식서명이 완료됨.

02 | 상품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농축산물에 대해 69% 자유화 수준으로 개별 양허

2.1. 한·중미 FTA 농축산물 양허 개요

- 한국과 중미 5개국은 개별적으로 상품양허를 하였으며 우리 측 양허대상 농축산물은 2015년 한국표준품목분류(HSK) 기준 1,623개 세번임. 양허 유형은 12가지로 관세 즉시 철폐, 3년, 5년, 7년, 9년, 10년, 12년, 15년, 16년, 19년 철폐, 양허제외, 협정배제임. 농축산물 중 TRQ로 양허한 품목은 없음.

〈표 1〉 한·중미 FTA에서 우리나라의 對중미 농축산물 양허 현황

단위: 세번수, %

양허 유형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세번수	비중	세번수	비중	세번수	비중	세번수	비중	세번수	비중
A(즉시)	276	17.0	282	17.4	274	16.9	277	17.1	275	16.9
B(3년)	42	2.6	62	3.8	42	2.6	41	2.5	41	2.5
C(5년)	189	11.6	171	10.5	181	11.2	184	11.3	182	11.2
D(7년)	21	1.3	18	1.1	17	1.0	19	1.2	17	1.0
J(9년)	-	-	-	-	1	0.1	-	-	-	-
E(10년)	141	8.7	128	7.9	132	8.1	150	9.2	142	8.7
F(12년)	329	20.3	324	20.0	332	20.5	332	20.5	329	20.3
G(15년)	86	5.3	93	5.7	96	5.9	88	5.4	95	5.9
H(16년)	42	2.6	30	1.8	36	2.2	60	3.7	32	2.0
I(19년)	1	0.1	-	-	-	-	2	0.1	2	0.1
소계	1,127	69.5	1,108	68.2	1,111	68.5	1,153	71	1,115	68.6
X(양허제외)	480	29.6	499	30.7	496	30.6	454	28.0	492	30.3
Y(협정배제)	16	1.0	16	1.0	16	1.0	16	1.0	16	1.0
소계	496	30.6	515	31.7	512	31.6	470	29	508	31.3
합계	1,623 (100%)									

자료: 한·중미 FTA 우리 측 양허안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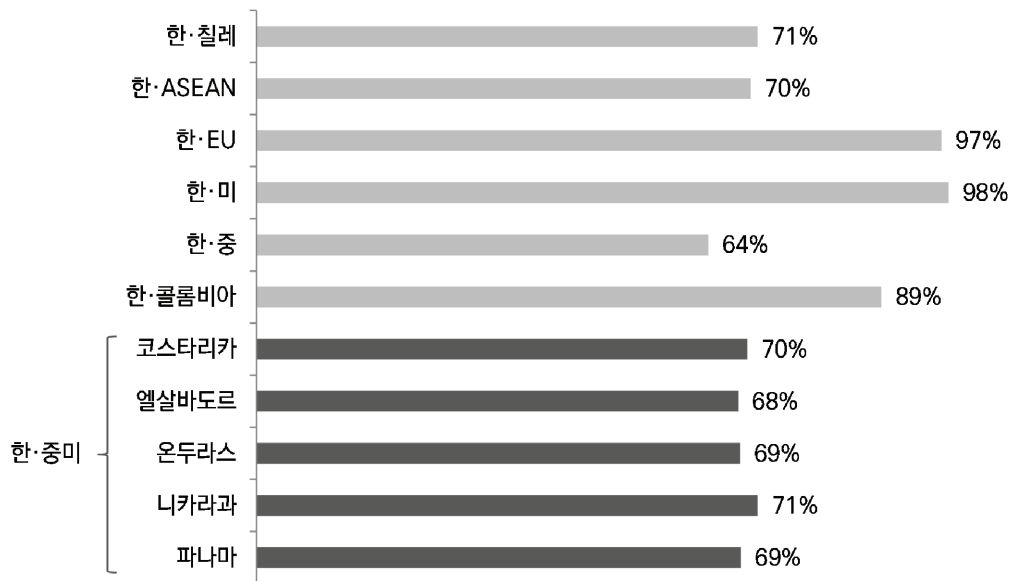
- 한·중미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자유화 수준²⁾은 약 69%(세번수 기준)로, 한·EU, 한·미 FTA에 비해 낮고 한·ASEAN, 한·칠레 FTA와는 유사함. 국가별로 별도의 양허안에 합의하였으나 국가별 차등은 크지 않음.

- 한·중미 FTA에서 우리나라의 對중미 자유화 수준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니카라과(71%), 코스타리카(69.5%), 파나마(68.6%), 온두라스(68.5%), 엘살바도르(68.2%) 순임.

2) 발효 후 20년 이내 철폐에 합의한 품목의 비중

- 관세 철폐 기간에 따라 단기(즉시~10년), 장기(12년~20년), 양허제외로 나누어 살펴보면, 단기 철폐 비중이 40%, 11년 이상 20년 이내 관세 철폐의 비중이 약 28%, 양허제외가 약 30%를 차지함.

〈그림 1〉 주요 기 체결 FTA별 농축산물 자유화 수준 비교



자료: 국가별 FTA 협정문.

□ 중미 측의 품목 분류는 SAC 세번³⁾ 8단위 기준으로, 농축산물⁴⁾에 해당하는 세번수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972~974개, 파나마는 1,344개임. 농축산물 양허유형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관세 즉시 철폐, 3년, 5년, 7년, 10년, 12년, 15년, 16년, 19년 철폐, 양허제외로 10가지이며 TRQ를 적용한 품목은 없음.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의 농축산물 세번수는 SAC 8단위 기준으로는 972개로 같으나, 기타음료(SAC 2202.90.90)의 세분화 정도에 따라 전체 세번수는 1~2개의 차이가 있음. 파나마의 경우도 농축산물 세번수는 SAC 8단위 기준 1,344개이나, 기타음료의 세분화로 전체 세번수는 1개 더 많은 1,345개임.
- 5개국 중 온두라스는 양허 유형을 관세 즉시 철폐, 5년, 10년, 15년 철폐, 양허제외로 비교적 단순하게 합의함.

3) SAC(중미공동관세체계, Sistema Aranceria Centroamericana)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의 공동 관세체계를 의미함. SAC의 품목 체계는 HS code 체계를 준용함. 파나마의 경우 양허표 규정은 파나마 공화국 수입관세(Arancel de Importación de la República de Panamá)식으로 표현됨.

4) SAC 2단위 기준 01~24류(03류 제외)를 포함함.

중미 측은 우리보다 높은 80%의 자유화 수준으로 농축산물을 양허

□ 중미 측의 농축산물 자유화 수준⁵⁾은 약 80%(세번수 기준)로 우리나라의 자유화 수준(69%)보다 높음. 특히, 협정배제 품목은 없으며 즉시 철폐 세번의 비중 또한 우리나라보다 높음. 전체 농축산물 중 63%~84%의 품목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로 양허함.

○ 한·중미 FTA에서 중미 국가별 대한국 자유화 수준은 엘살바도르(87.3%), 온두라스(80.6%), 파나마(79.8%), 니카라과(78.4%), 코스타리카(75.2%) 순임.

〈표 2〉 중미 5개국의 대한국 농축산물 양허 현황

단위: 세번수, %

양허 유형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세번수	비중	세번수	비중	세번수	비중	세번수	비중	세번수	비중
A(즉시)	319	32.8	315	32.4	309	31.8	305	31.3	445	33.1
B(3년)	10	1	10	1	-	-	10	1	11	0.8
C(5년)	87	8.9	78	8	115	11.8	82	8.4	161	12
D(7년)	6	0.6	-	-	-	-	10	1	1	0.1
E(10년)	194	19.9	417	42.9	280	28.8	269	27.6	237	17.6
F(12년)	3	0.3	1	0.1	-	-	8	0.8	-	-
G(15년)	100	10.3	28	2.9	80	8.2	66	6.8	215	16
H(16년)	12	1.2	-	-	-	-	11	1.1	3	0.2
I(19년)	1	0.1	-	-	-	-	2	0.2	-	-
소계	732	75.2	849	87.3	784	80.6	763	78.4	1,073	79.8
X(양허제외)	242	24.8	123	12.7	189	19.4	210	21.6	272	20.2
소계	974	100	972	100	973	100	973	100	1,345	100

자료: 한·중미 FTA 중미 측 국가별 양허안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5) 발효 후 20년 이내 철폐에 합의한 품목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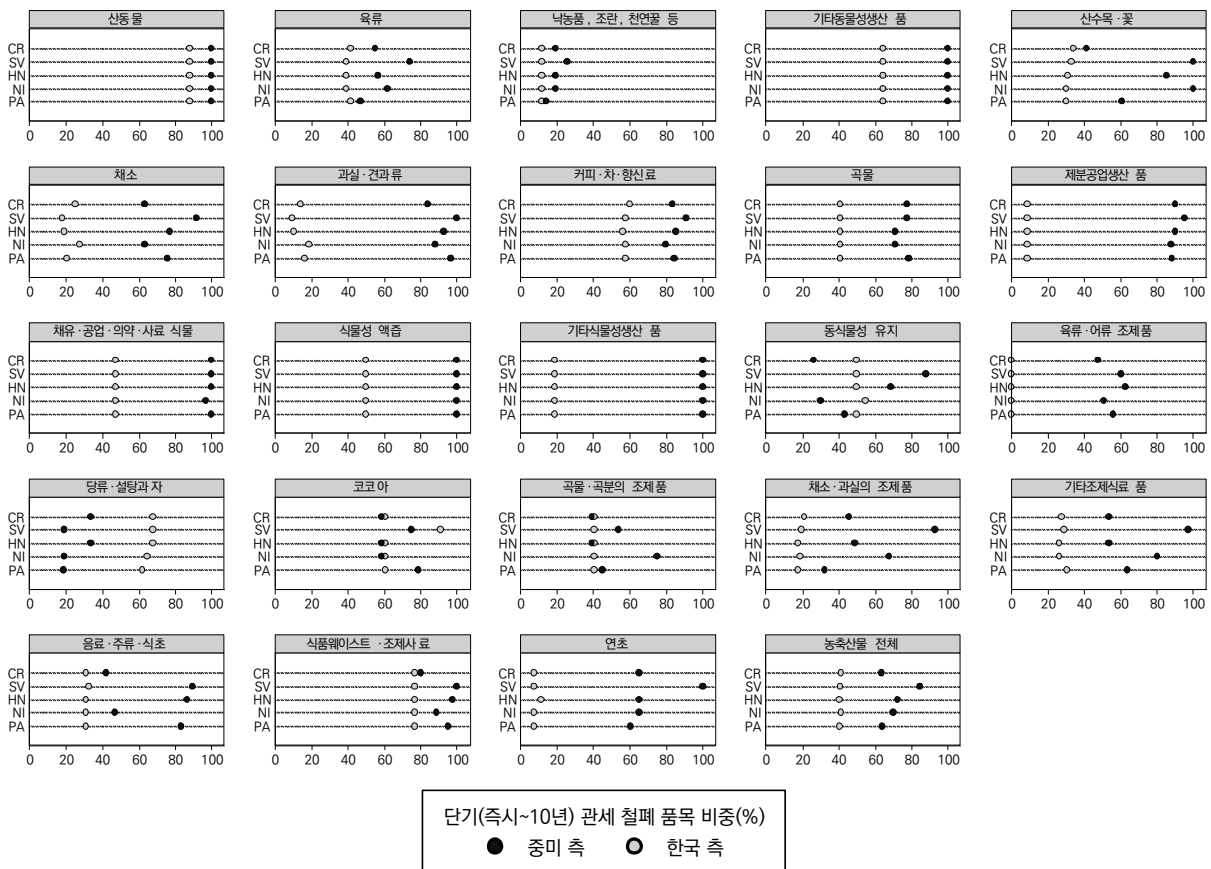
우리 측 주요 민감품목은 협정배제/양허제외를 통해 관세 감축 의무 대상에서 제외

2.2. HS 2단위별 양허 현황

□ 우리나라와 중미 측의 HS 2단위별 관세 단기철폐(즉시~10년) 품목 비중을 비교하면,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중미 측의 관세 단기철폐 품목의 비중이 높음.

○ 17류(당류·설탕과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관세 단기철폐 품목의 비중이 높으며, 15류(동식물성 유지)와 18류(코코아)의 경우 중미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임.

〈그림 2〉 우리나라와 중미국가들의 HS 2단위별 관세 단기철폐 품목 비중



주: CR=코스타리카, SV=엘살바도르, HN=온두라스, NI=니카라과, PA=파나마를 의미함.
 자료: 한·중미 FTA 양허안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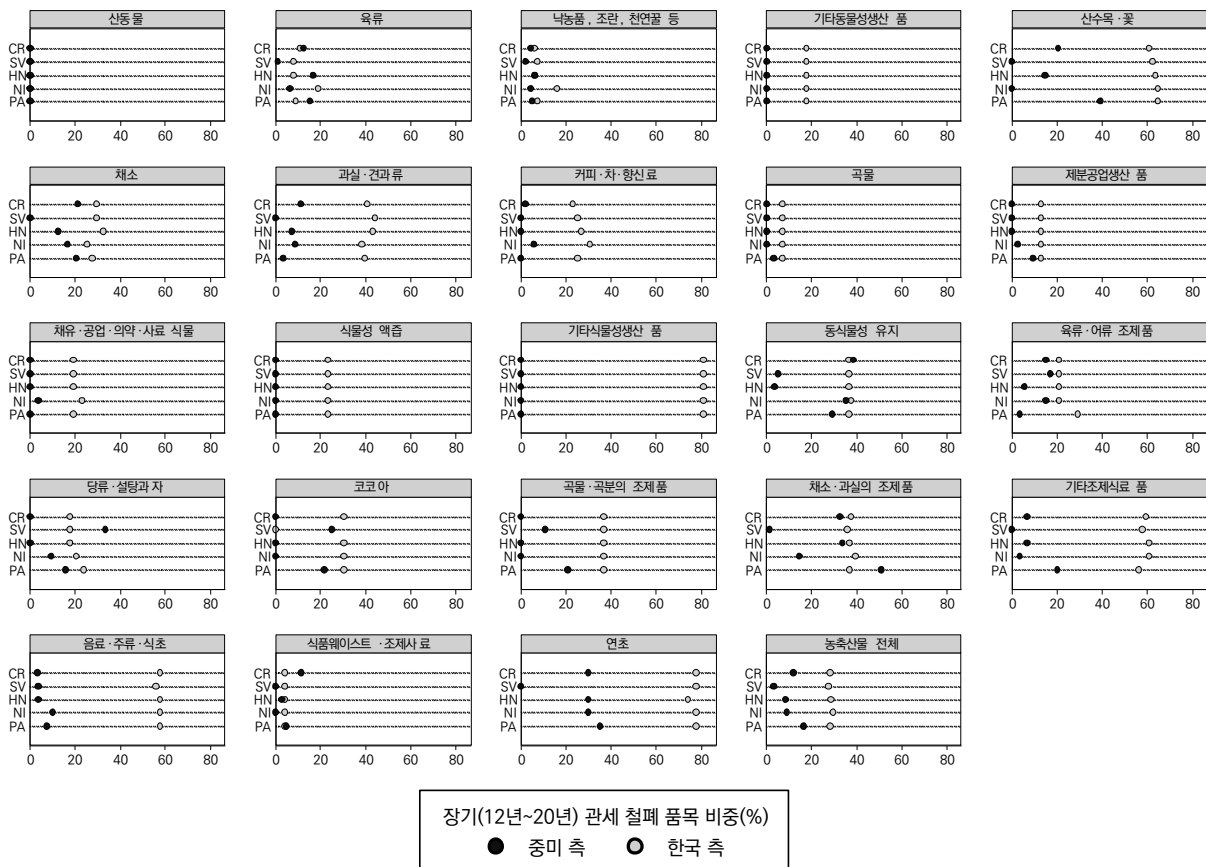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02류(육류), 04류(낙농품·조란·천연꿀 등), 06류(산수목·꽃), 07류(채소류), 08류(과실·견과류), 11류(제분공업생산품), 14류(기타식물성생산품), 16류(육류·어류조제품), 20류(채소·과실의 조제품), 21류(기타조제식료품), 22류(음류·주류·식초), 24류(연초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약 60% 이상을 12년 이상 장기 관세 철폐로 양허하거나 양허에서 제외함.

○ 특히 쌀 관련 품목(쌀, 쌀가루 등)은 협정에서 제외하였음.

□ 중미 국가들의 경우 관세 장기철폐, 양허/협정 제외로 양허한 품목의 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나 04류(낙농품·조란·천연꿀 등), 17류(당류·설탕과자)에 대해서는 중미 5개국 모두 보수적으로 양허함.

○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는 19류(곡물·곡분의 조제품)의 양허제의 비중이 61%로 나머지 중미 국가들(25%~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 우리나라와 중미국가들의 HS 2단위별 관세 장기철폐 품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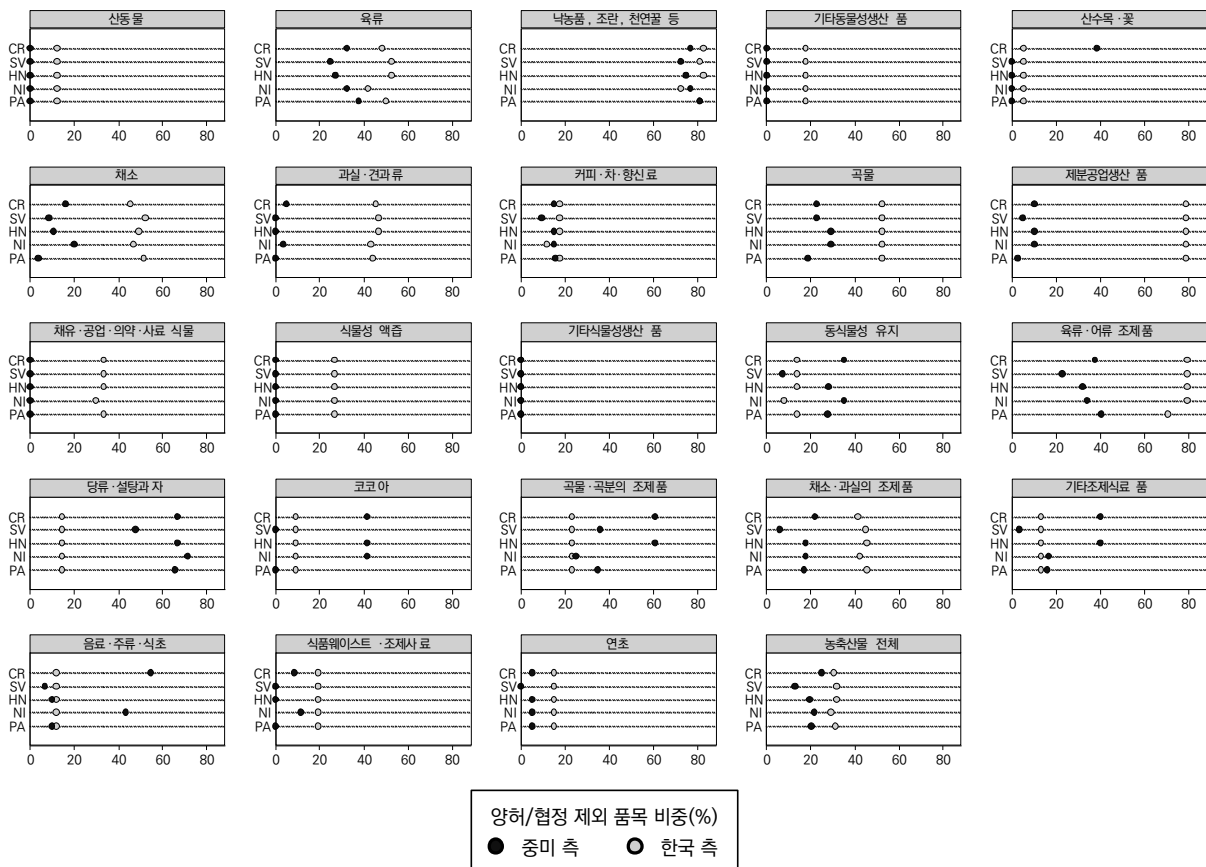


주: CR=코스타리카, SV=엘살바도르, HN=온두라스, NI=니카라과, PA=파나마를 의미함.
 자료: 한·중미 FTA 양허안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에 대해 큰 차등 없이 양허하였으나 중미 국가들의 경우 산업 민감도에 따라 양허 방식에 차이를 보임.

- 중미 국가별로 양허 유형별 비중에 차이를 보이는 품목류는 06류(산수목·꽃), 07류(채소류), 15류(동식물성 유지), 19류(곡물·곡분의 조제품), 20류(채소·과실의 조제품), 21류(기타조제식료품), 22류(음료·주류·식초류) 등으로 이들 상품에 대한 국가별 민감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음.

〈그림 4〉 우리나라와 중미국가들의 HS 2단위별 양허/협정 제외 품목 비중



주: CR=코스타리카, SV=엘살바도르, HN=온두라스, NI=니카라과, PA=파나마를 의미함.

자료: 한·중미 FTA 양허안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2.1. 우리나라 측

- HS 04류(낙농품·조란·천연꿀 등), 11류(제분공업생산물), 16류(육류·어류조제품)의 경우 양허제외 품목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음. 02류(육류)와 07류(채소류)도 품목의 약 50%를 양허에서 제외함.
 - 생우유, 탈지분유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낙농품에 대해 양허제외하였으며, 발효유 일부 세번에 대해서는 12년 관세 철폐로 양허함. 천연꿀에 대해서는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산에 대해 16년 관세 철폐로 양허하고, 나머지 국가들에는 양허제외함.
 - 제분공업생산품의 경우 밀가루와 옥수수가루는 3년 관세 철폐, 일부 건조한 채두류는 12년 관세 철폐로 양허하였으나 대부분의 세번에 대해서는 양허제외(약 70%)하거나 협정배제(쌀 가루 등)함.
 - 육류·어류조제품 중 소시지, 동물의 간장 등은 12년 관세 철폐에 합의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양허에서 제외함.
 - 중미산 육류에 대해서는 닭고기를 제외한 가금육(칠면조, 거위 등)과 면양고기 등에 대해 10년 내 관세 철폐로 양허하였으며, 일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10~19년 관세 철폐로 양허함.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산 쇠고기(뼈 없는 것, 식용설육 등)에 대해 16~19년 관세 철폐로 양허하였고, 돼지고기(넓적다리 살 등)에 대해 10~16년 관세 철폐로 양허함.
 - 양파 마늘, 고추, 송이버섯, 표고버섯 등 주요 채소류는 양허제외하였으며, 조제처리한 채소(올리브 등)는 3년 관세 철폐, 건조 버섯류나 채두류는 10년 관세 철폐로 양허함.
- HS 06류(산수목·꽃), 14류(기타식물성생산물), 21류(기타조제식료품), 22류(음류·주류·식초), 24류(연초류)의 경우 12년 이상 20년 이내 장기철폐로 양허한 상품의 비중이 약 60% 이상임.
 - 기타조제식료품 중 커피엑스나 기타커피조제품은 국가에 따라 즉시 철폐하거나 3~5년에 걸쳐 철폐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차·마테는 양허제외 또는 10~12년 관세 철폐로 양허함. 효모류, 소스류도 12~16년 장기 관세 철폐로 양허함.
 - 음료류는 일부 음료(인삼음료, 식혜 등)를 제외하고는 10년 내 관세 철폐로 양허하였으며 주류의 경우 대부분 12년 이상 장기 관세 철폐로 양허하거나 양허제외함.

- 중미 측 주요 관심 품목이나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는 민감성이 낮은 커피,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등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거나 5~16년 철폐 등으로 양허함. 이는 기존의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개방 수준과 유사함.
 - 중미 5개국 공통적으로 커피는 즉시 철폐하였고 파인애플(신선)은 7년 관세 철폐로 양허함. 바나나는 엘살바도르산(15년 철폐)을 제외하고 5년 관세 철폐로 양허함. 망고는 온두라스와 파나마산은 16년 관세 철폐, 나머지 국가들은 7년 관세 철폐로 양허함.
 - (對 코스타리카) 멜론과 파파야의 경우 검역으로 수입되지 않으나 코스타리카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10년, 7년 관세 철폐로 양허함.
 - (對 온두라스) 멜론은 검역으로 수입되고 있지 않으나 온두라스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9년 관세 철폐로 양허함.
 - (對 니카라과) 땅콩과 치즈는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지 않으나 니카라과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16년 관세 철폐로 양허함.

2.2.2. 중미 측

- 중미 측은 04류(낙농품·조란·천연꿀 등)에 해당하는 품목 중 72%(엘살바도르)~81%(파나마)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중미 국가들의 민감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엘살바도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17류(당류·설탕과자)에 대한 양허제외 비중도 66%(파나마)~71%(니카라과)로 높은 편임.
 - 낙농품의 경우 버터오일이나 체더치즈 등 일부 세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세번을 양허제외 하였으며, 조란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 또는 10~15년 철폐하는 것에 합의함. 천연꿀의 경우 파나마는 10년, 나머지 국가들은 15년 관세 철폐로 양허함.
 - 중미 5개국 모두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자당을 양허제외함.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4개국은 위의 당류 이외의 당류와 당밀 등도 양허에서 제외하였으며, 엘살바도르는 15년 장기 관세 철폐로 양허함.
- 02류(육류)의 양허 현황을 살펴보면, 5개국 모두 닭고기 이외의 가금육에 대해 10~15년 관세 장기 철폐로 양허하였고,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양허에서 제외함. 쇠고기의 경우 파나마는 양허제외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10~19년 관세 철폐로 양허함.

-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쇠고기 6개 세번에 대해 10년 또는 15년 관세 철폐로 양허하였고,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는 빼 없는 것에 한해 19년 관세 철폐로 양허함.
- 07류(채소류), 08류(과실·견과류)의 양허 현황을 살펴보면, 5개국 모두 감자, 양파와 쪽파 등을 양허 제외하였고,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는 감귤류(만다린 류 포함)를 양허제외함. 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10년 이내 관세 철폐로 양허함.
- 우리나라의 최대 對중미 수출품목인 기타음료(SAC 2202.90.90)에 대해 품목을 알로에 음료, 유제품 음료, 알로에와 유제품 음료를 제외한 기타음료로 세분화하여 양허함. 특히, 알로에 음료의 경우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는 FTA 발효 후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함.
 - 기타음료(알로에 및 유제품 음료를 제외)에 대해 엘살바도르는 12년 관세 철폐,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15년 관세 철폐, 파나마는 16년 관세 철폐로 양허함.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는 기존 기본관세율이 10~15%이던 알로에 음료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함.
 -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는 유제품 음료를 양허에서 제외함.

〈표 3〉 중미 5개국의 기타음료 세번 분류 및 양허 현황

세번	품목설명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22029090	알로에 및 유제품 음료를 제외한 기타음료	G(15년)	F(12년)	G(15년)	G(15년)	H(16년)
22029090 A	알로에 음료	A(즉시)	-	-	A(즉시)	A(즉시)
22029090 B	유제품 음료	X(양허제외)	-	X(양허제외)	-	-
기본관세율		15%	15%	15%	15%	10%

주: 국가별로 알로에 음료와 유제품 음료의 세분화 표기법에 차이가 있으나 통일성을 위해 알로에 음료는 A, 유제품 음료는 B로 표기함.
 자료: 한·중미 FTA 양허안.

03 | 규범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

원산지 규정은 한·콜롬비아 FTA 수준, 대체로 신선 완전생산, 가공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

3.1. 원산지 규정

- 한·중미 FTA에서 양국은 신선농축산물(HS 01류~14류)에는 대체로 완전생산기준⁶⁾, 가공농축산물(15류~24류)에는 세번변경기준⁷⁾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함. 이는 한·콜롬비아 FTA와 유사한 기준임.
 - 01류~14류의 신선농축산물에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나 HS 11류 일부 세번(맥아, 전분 등)에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함.
 - 15류~24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중심임. 일부 품목(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 일부 베이커리류, 크랜베리 주스 등)은 부가가치기준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06류~15류에 해당하는 식물성 생식품은 비당사국에서 씨, 뿌리, 싹, 봉오리 등을 수입하여 당사국 영역 내에서 재배한 식물로 생산된 경우에도 원산지가 인정됨.
-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⁹⁾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 가치의 10% 이하인 경우로 규정됨. 그러나 완전생산기준이 인정되는 신선농축산물(01류~14류)에는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공농축산물(15류~24류)에는 6단위 세번변경인 경우를 조건으로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됨.
 -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 동식물성 유지생산물(HS 15류)은 최소허용기준을 미적용함.

6) 완전생산기준이란 “어떤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서,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상품’은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기준”임(FTA 종합지원센터 원산지기준확인 <http://okfta.kita.net/contents.do?method=contents&contents_seq=144&mainNum=030302>).

7) 세번변경기준이란 “HS Code를 이용하여 사용된 원재료(materials)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제품(goods)이 생산된 경우 당해 제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비원산지재료와 같은 세번의 제품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임(FTA 종합지원센터 원산지기준확인). HS 2단위(류), 4단위(호), 6단위(소호) 변경기준이 있음.

8) 부가가치기준이란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임(FTA 종합지원센터 원산지기준확인). 한·중미 FTA에서는 역내부가가치 계산을 위해 공제법(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제외) 또는 집적법(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누적)을 사용할 수 있음.

9) 최소허용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소량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기준 충족을 못하더라도 해당 상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제도”임(FTA 종합지원센터 원산지기준확인).

- 한·중미 FTA의 원산지 규정에는 상품의 재수출 조항(제3.16조)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한국과 중미 국가들은 당사국 자유지역 내에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변화시키는 공정을 거치지 않고 그 상품에 수행된 공정이 재수출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국이 발행하는 상품의 재수출증명서를 인정함.
 - 재수출되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는 비당사국과 다른쪽 당사국 간 발효 중인 무역협정에 따라 결정됨.
- 원산지 증명의 경우 수출자·생산자의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원산지 검증의 경우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방식을 모두 채택함.
 - 직접검증 방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에 직접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통해 원산지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며, 간접검증 방식은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결과를 수입국에 통보하는 것임.
 - 한·미 FTA는 직접검증을 원칙으로 하며 한·EU FTA는 간접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한·콜롬비아 FTA는 한·중미 FTA와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한·중미 FTA에서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가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결정하고 원산지 지위 결정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콜롬비아 FTA는 영역 원칙의 예외를 두어 일부 품목에 대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원산지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축산물은 포함되지 않음.

SPS는 WTO/SPS 협정 준수, TBT는 WTO/TBT 협정 이상의 포괄적 수준 규정

3.2.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 SPS와 관련해서는 WTO/SPS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간 정보교환, 기술 협력 등을 증진하고 협의를 강화하도록 규정함.
 - SPS와 관련한 분쟁 사안은 한·중미 FTA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함.
 - SPS 챕터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SPS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
- TBT와 관련해서는 WTO/TBT 협정 이상의 포괄적 수준을 규정함. TBT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관련 당사국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 한·콜롬비아 FTA에서는 WTO/TBT 협정을 준수하며 이행을 강화하는 차원의 TBT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나 한·중미 FTA의 TBT 조항은 WTO/TBT 협정보다 포괄적인 WTO 플러스 수준을 규정함.
 -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투명성, 표시 및 라벨링 등 13개 조로 구성됨.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상호인정근거 조항을 두고 있으며, 표시 및 라벨링 조항에서 기술규정이 표시나 라벨링을 포함하는 경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04 | 시사점

아시아 국가 최초, 중미 5개국과의 FTA 체결을 계기로 중미 시장 선점 기대

- 한·중미 FTA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체결한 FTA로 중미 측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이 큼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확대 및 중미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됨.
- 한·중미 FTA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민감 농산물인 쌀(협정배제),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과일류(사과, 배 등) 등을 양허에서 제외하였음. 육류 중 일부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 관세 인하에 합의하였으나 장기 철폐로 양허하여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함.
 - 중미산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현재 검역 문제로 수입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FTA 발효에 따른 수입 증대의 우려는 낮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중미 측 주요 관심 품목이나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는 민감성이 낮은 커피,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등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거나 5~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함. 이는 기존의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개방 수준과 유사함.
 - 중미 측 주요 수출 품목인 커피, 당류(사탕무당, 원당 등)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양허하였으나, 이들 품목의 기존 관세율이 2~3%로 이미 낮은 수준이며, 국내에 직접적인 경쟁품목이 없어 FTA에 따른 관세 철폐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파인애플(신선)은 7년 관세 철폐로 양허함. 바나나는 엘살바도르산(15년 관세 철폐)을 제외하고 5년 관세 철폐로 양허함. 망고의 경우 온두라스와 파나마산은 16년, 나머지 국가들은 7년 관세 철폐로 양허함.
- 우리나라의 對중미 주요 수출 품목은 음료류 등의 가공식품이며, 수출액이 가장 높은 기타음료의 경우 중미 측이 관세를 즉시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합의하여 장기적으로 농축산물 수출액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는 알로에 음료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여 단기적으로 볼 때 이들 품목의 수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 중미 국가들이 쇠고기 및 주요 신선 과일류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였으므로 중미 국가들의 검역 및 위생요건을 충족시키고 소비자 수요를 파악하여 신선농축산물 수출을 확대해나간다면 FT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봄.